

2026년 진달래마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과 인정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유효한 등급(시설급여)으로 갱신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향상 및 유지하고 하얀연꽃 요양원 이용에 따른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행하고자 함.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월 이용료 :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입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12%, 8%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2026년 1월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어, 요양보호사 배치 인원**에 따라 **이용수가(시설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2026년 진달래마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2.1:1 운영

(단위:원)

등급	1일 수가	30일 기준	본인부담금(1일 기준)				
			일반대상 (20%)	경감대상 (12%)	경감대상 (8%)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1등급	93,070	2,792,100	18,614	11,168	7,446	0	
2등급	86,340	2,590,200	17,268	10,361	6,907	0	
3등급	81,540	2,446,200	16,308	9,785	6,523	0	

※ 시설 3등급 ~ 시설 5등급은 3등급 수가적용

나.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 월 2회 이상 계약의 진료가 제공되며 초진은 계약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뵈고 진찰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에 해당, 본인부담금은 진료수가 변동에 따라 변동에 따라 산정되며, 입소자는 계약의 진료비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12%, 8%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진찰구분	수급자 본인부담금(기준)				(단위: 원)
	일반 (20%)	감경대상자 (12%)	감경대상자 (8%)	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8%)	기초생활수급자 (0%)
초진 (18,840)	3,760	2,260	1,500	1,500	무료
재진 (13,370)	2,670	1,600	1,060	1,060	

다. 기타비용부담액(비급여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며, 식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하얀연꽃 기관정보에 고지된 금액으로 한다.

비급여항목	기타 비용부담액			(단위: 원)
	1식 단가기준	30일 기준	비고	
식사비(1일 3식)	2,000	180,000	저염식 고단백	
간식비(1일 3회)	1일 1,000원	30,000		
식간식비	1개월	210,000		

4. 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원과 서비스 이용자, 신원인수인(보호자)간에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신원인수인 및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권리)

- 입소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 시 요양원에 협조를 요청할 권리

(의무)

-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입소자가 요양원 서비스 이용 시 고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파손에 대한 책임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입소자가 요양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채무 발생 시 변제의 책임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원에 통지해야 한다.

- 1)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입소자의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3)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4) 기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으로써 의무이행이 어려울 때

나. 입소자의 권리·의무

(권리)

- 요양원의 시설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받을 권리
- 입소자의 인권(사생활, 학대방지, 식생활, 위생, 의료 및 건강, 프로그램, 교육, 진정권등)을 보장받을 권리
- 타 입소자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요양원 내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요양원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5.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를 결정할 때

나. 입소자·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다. 입소자·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받고 다른
어르신이나 서비스제공자에게 전염을 시킬 우려가 있을 때
- 라. 2회 이상 이용료를 연체하고도 사유 및 기한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고의성)
- 마. 요양원 내에서 요양원의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바.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서비스제공자에게 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가할 경우.
-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요양원은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사전고지를 통해 사실을
알리고,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 가. 입소자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라. 그 밖의 비급여 항목의 추가나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